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단체 추가 등〉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71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단체’ 추가	2
2.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근거 신설 및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목적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 추가	6
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 생산자단체 추가 등	9
※ 참고자료	
1. 인구감소지역(89개) 지정 결과	13
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법 제26조의4제2항 관련)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8.
3. 회부연월일 : 2024.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시장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우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활력 및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여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15조의2 신설,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제26조의6).

Ⅲ. 검토의견

1.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단체’ 추가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개별가맹점’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 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2. ----- - 제13호----- ----- ----- ----- ----- -----.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3. “개별가맹점”이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현행	개정안
<u>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u> <u>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u> <u><신 설></u>	<u>가. 시장등의 상인</u> <u>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u> <u>14.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u> <u>가. 제13호에 따른 개별가맹점</u> <u>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u>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등¹⁾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²⁾에 따른 ‘인구감소지역’³⁾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농업·

1)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⁴⁾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⁵⁾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인바,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 판매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생산자단체의 사업장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지역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행정안전부는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음(참고자료1).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다만, 현행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취지가 전통시장등 상인의 매출 증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의 대상 지역(인구감소지역) 및 대상 사업장(생산자단체 사업장)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 정책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할 것인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등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제반 국가 정책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생산자단체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이 새로운 상품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그리고 기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⁶⁾⁷⁾는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항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의 소관 사항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특례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에

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산자단체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경우 인근 영세상권의 매출을 잠식할 우려가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영세상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전국상인연합회⁸⁾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여 대형 유통망과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가진 생산자단체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임.

2.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근거 신설 및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목적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 추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목적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15조의2,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

8)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상인연합회)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 개발과 판로 확보, 구매·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등의 사업을 함.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u>촉진을</u>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u>구감소지역 내에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 ----- <u>촉진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를</u> ----- -----.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상점가 등에 대한 활성화사업 추진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⁹⁾를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 통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행, 실적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목적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추가하고 있는바,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설치·운영 지원’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¹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및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¹¹⁾이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목적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추가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설치·운영 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의 활성화 및 상인의 매출 기반 확대가 목적이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동 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시행 책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 생산자단체 추가 등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 생산자단체를 추가하고 (안 제26조의4), 등록 제한업종 영위를 이유로 하는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에서 생산자단체를 제외하고 있음(안 제26조의6).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u>상인 또는 상인조직</u> 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 ----- <u>상인, 상인조직 또는 생산자단체</u> ----- ----- ----- --. ----- ----- ----- -----.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u>상인 및 상인조직</u> 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 ----- <u>상인, 상인조직 및 생산자단체</u> -----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가맹점으로 등록한 <u>상인 또는 상인조직</u> 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 <u>상인, 상인조직 또는 생산자단체</u> ----- ----- ----- -----.

현행	개정안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 ----- <u>경우(생산자단체는 제외한다)</u>
3.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④ ----- ----- ----- -----.
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1. <u>가맹점(생산자단체는 제외한다)</u> -----
2.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⑤ · ⑥ (생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등록 제한업종¹²⁾(참고자료2)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개정안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 생산자단체를 추가한 것은 안 제2조 등에 따라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법 제26조의 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소속 전통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말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부장관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및 소속 전통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생산자단체를 그 취소 또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인데,

안 제26조의6제4항제1호는 생산자단체의 경우 소속 전통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했는지를 기준으로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보여짐.

다만, 생산자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혹은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등록 취소·말소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전통시장등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과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참고자료1] 인구감소지역(89개) 지정 결과(2021년 10월)

구분	시·군·구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지역 18개)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자료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법 제26조의4 제2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31	주류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462	연금업
855	일반교습학원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21, 91222, 91229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